

# 2015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유치원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관리를 위한 탐색

일시 | 2015. 4. 28. (화) 15:00-16:30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2015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유치원 안전한 실내·외 환경관리를 위한 탐색

□ 일시: 2015. 4. 28.(화) 15: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

---

15:10~15:50 발표

유치원 안전한 실내·외 환경관리를 위한 탐색

이진화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배운진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15:50~16:20 지정토론

이성희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희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홍혜정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16:20~16:3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발표**

**유치원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관리를 위한 탐색**

---

이진화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배윤진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유치원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관리를 위한 탐색<sup>1)</sup>

## 1. 들어가는 말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유치원 취원율은 2005년 30.0%에 비해 2014년 현재 47.0%로 증가하였고, 유치원 취원율의 증가와 더불어 방과후 과정 이용률 역시 2005년 20.8%에서 2014년 67.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최은영, 이진화, 오유정, 2014). 이 같은 유치원 취원율과 방과후 과정 이용률의 증가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치원 이용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1일 유치원 이용시간이 평균 7.19시간(이윤진, 이규림, 조아라, 2014), 평균 6~8시간 이용 유아 비율이 약 41.9%, 8~10시간 이용 유아 비율이 약 25.1%(최은영, 김은영, 이세원, 2013)로 상당수의 유아들이 자신의 하루 일과의 많은 비중을 유치원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의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은혜, 2006). 학교안전공제회 사고발생 및 보상처리 통계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건이 2009년 4,094건으로 2009년 유치원 취원아 수 대비 약 0.76%였으나, 2014년은 총 7,602건으로 취원아 수 대비 약 1.16%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안전공제회, 2014)<sup>2)</sup>. 유치원 안전사고의 증가는 취원아 수가 증가하고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르게 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줄이기 위한 배가된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아기 발달 특성 상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는 점(박영선, 신동주, 2014), 둘째, 하루 일과 중 장시간 유치원 생활은 유아의 신체적·정서적 피로도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주의가 산만한 상태가 되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 셋째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조절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해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경우(김경중, 서경택, 2009)등이다. 이 같은 일련의 이유들로 인해 유치원의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

1) 본 고은 '유치원 홍보 리플렛 영상·유치원건강안전가이드북 개발' 연구 내용에 근거해서 구성하였음.

2)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06\\_participation/part05.html](http://www.ssif.or.kr/06_participation/part05.html)) 2015. 4. 20. 인출.

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유치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과 유치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행정처 등에서는 자체점검과 매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형태로 유치원 실내·외 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각의 법령을 근거로 진행된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경영자포함), 안전을 담당하는 교직원, 안전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행정 관련자들은 법령에 근거한 관리내용, 규제, 사후조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치원 안전 관련 각종 법령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치원 안전 관련 내용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여 유치원 원장 혹은 교사들이 이를 모두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치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 교직원, 안전관리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해서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유치원장, 교육청 담당자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를 개발하였다. 본 고는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의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안전사고 발생추이, 안전관리업무현황, 유치원 실내·외 안전법령을 고찰하고, 예시를 통해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유치원 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유치원 안전의 범위는 매우 넓다. 유치원 등원에서부터 하원까지 유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정서적 환경이 모두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원고에서는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에서 제시한 폭넓은 유치원 안전관리 내용에서 유아들이 유치원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고 이용하는 교실의 교재교구관리, 실내 공기 질, 석면관리 부분과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안전사고 발생 추이 및 안전 관리 업무 현황

### 가. 어린이 안전사고 정보<sup>3)</sup>와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추이<sup>4)</sup>

3)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http://www.isafe.go.kr/children/contents.do?key=509>)의 '어린이안전 통계'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2015. 3. 31. 인출

4) 본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고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통계치 산출에 제시된 유치원 취원아 수는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최은영, 이진화, 오유정, 2014)의 자료를 사용함.



## 1) 어린이 안전사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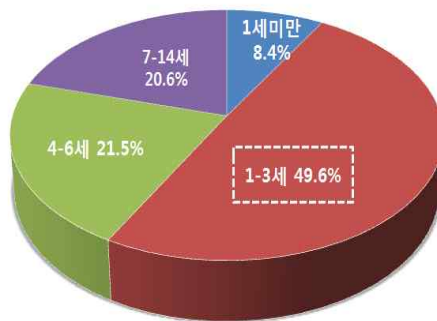
어린이 안전사고 2011~2013년 전체적인 경향은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안전통계’에서 확인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2014).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危害) 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14세 이하의 어린이 위해 정보 건수를 발표하고 있다. 위 자료에 의하면 2011~2013년 어린이 위해 정보 접수건수는 2011년 20,732건, 2012년 22,907건, 2013년 24,312건으로 전체 접수되는 위해건수 대비 약 37% 정도이다. 성별에 따른 위해정보 건수의 비율에서 남아 약 60.9%, 여아 약 38.5%로 남아에게서 발생하는 위해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2014).

어린이안전넷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의 연령대별 위해 정보를 살펴보겠다(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2014: <표 1>, [그림 1] 참조).

<표 1> 2011~2013년 취학 전(0~6세)과 취학기(7~14세) 위해 정보

구분		남아	여아	미상	단위: 건(%) 합계
취학 전	1세미만(영아기)	3,054(53.5)	2,426(42.5)	231(4.0)	5,711(100.0)
	1-3세(걸음마기)	20,270(60.2)	13,355(39.7)	47(0.1)	33,672(100.0)
	4-6세(유아기)	8,968(61.5)	5,573(38.2)	45(0.3)	14,586(100.0)
	소계	32,292(59.8)	21,354(39.6)	323(0.6)	53,969(100.0)
취학	7-14세(취학기)	9,110(65.2)	4,827(34.5)	45(0.3)	13,982(100.0)
합계		41,402(60.9)	26,181(38.5)	368(0.5)	67,951(1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어린이안전통계 그래프로 보는 사고정보(2015. 3. 31 인출)



[그림 1] 2011~2013년 연령구간별 어린이 위해정보

출처: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어린이안전통계(2015. 3. 31. 인출)

어린이안전넷 자료에 따르면 취학기 보다는 취학전 아동에게서 위해정보 즉 안전 사고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3세가 가장 높고, 1-6세까지 약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시기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2015. 3. 31. 인출).

가정·교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정·교육시설은 어린이들이 보호자(부모님 등) 혹은 교사와 같이 생활하는 곳이어서 성인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나, 이와 달리 실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은 높다고 하였다(박지민, 2012).

교육시설은 가정에 비해 상대적인 공간 규모가 크고 물리적 환경 역시 다양하여 어떠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유치원과 같이 다양한 물리적 환경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학습경험을 유도하는 장소에서는 최대한 유아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유아기 발달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유아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2)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추이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추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발생 통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유치원 취원아 수 대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을 보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은 0.76%에서 2014년 1.16%로 발생률 차이를 단순 비교하면 0.4%p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표 2> 참조).

<표 2> 2009-2014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연도별 추이

단위: 건,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sup>1</sup>	4,094	4,530	5,397	6,378	7,029	7,602
취원아수 <sup>2</sup>	537,361	538,587	564,312	612,794	654,821	652,546
비율	0.76	0.84	0.96	1.04	1.07	1.16

자료: 1.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2014. 4. 20 인출). '학교안전공제회 연도별 사고발생 및 보상통계' 연도별 사고발생통계, 2009-2014년 자료를 재구성함.

2. 최은영, 이진화, 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14쪽. 육아정책연구소

구체적인 사고발생 건수는 시간별, 장소별, 형태별, 부위별로 제시할 수 있는데, 세부 항목은 2012년도 통계부터 국제손상분류기준에 따라 항목 변경이 있어서 여기서는 2012~2014년 자료로 제시하겠다. 우선 안전사고 발생 시간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2012-2014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간별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수업시간	3,640	57.1	4,096	58.3	4,579	60.2
체육수업	518	8.1	627	8.9	644	8.5
점심시간(석식)	671	10.5	697	9.9	716(3)	9.4
휴식 및 청소시간	485	7.6	462	6.6	530	7.0
특별활동	55	0.9	59	0.8	67	0.9
학교행사	371	5.8	415	5.9	397	5.2
등하교	638	10.0	673	9.6	666	8.8
계	6,378(100.0)		7,029(100.0)		7,602(100.0)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2015. 4. 20. 인출) '학교안전공제회 연도별 사고발생통계' 2012~2014년 자료 재구성함.

유치원 안전사고는 2012~2014년 모두 전체 사건발생 수의 57.1~60.2%가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유아들이 교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제시한 <표 4>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유아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교실에서의 안전사고 건수가 전체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2-2014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교실	3,247	50.9	3,493	49.7	3,834	50.4
운동장	1,192	18.7	1,436	20.4	1,561	20.5
통로	712	11.2	760	10.8	796	10.5
교외활동	385	6.0	393	5.6	406	5.3
부속시설	831	13.0	925	13.2	990	13.0
가정 및 기타	11	0.2	22	0.3	15	0.2
계	6,378(100.0)		7,029(100.0)		7,602(100.0)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2015. 4. 20. 인출) '학교안전공제회 연도별 사고발생 및 보상통계' 2012~2014년 자료 재구성함.

유아 안전사고 형태는 물리적 힘의 노출로 인한 사고가 40%초반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고 형태이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넘어짐, 사람과의 충돌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표 5> 2012-2014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형태별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사람과의 충돌	676	10.6	798	11.3	940	12.4
물리적 힘 노출	2,783	43.6	3,027	43.1	3,231	42.5
낙상 - 넘어짐	1,600	25.1	1,734	24.7	1,841	24.2
낙상 - 미끄러짐	354	5.5	388	5.5	391	5.1
낙상 - 떨어짐	228	3.6	281	4.0	252	3.3
기타	737	11.6	801	11.4	947	12.5
계	6,378(100.0)		7,029(100.0)		7,602(100.0)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2015. 4. 20. 인출) '학교안전공제회 연도별 사고발생 및 보상통계' 2012~2014년 자료 재구성함.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는 신체 부위는 머리(두부)로 전체 사고 건수 중 43~45%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치아(구강), 팔, 손 부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2012-2014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부위별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건수	전체대비
머리(두부)	2,760	43.3	3,043	43.3	3,433	45.2
치아(구강)	1,267	19.8	1,300	18.5	1,439	18.9
흉복부	45	0.7	54	0.8	55	0.7
팔	639	10.0	769	10.9	783	10.3
손	639	10.0	715	10.2	762	10.0
다리	214	3.4	228	3.2	239	3.1
발	463	7.3	560	8.0	587	7.7
기타	351	5.5	360	5.1	304	4.0
계	6,378(100.0)		7,029(100.0)		7,602(100.0)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2015. 4. 20. 인출) '학교안전공제회 연도별 사고발생 및 보상통계' 2012~2014년 자료 재구성함.

위의 표들을 요약해 보면, 유치원 안전사고는 교실 수업시간 중 물리적 힘의 충돌로 인해 생겨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머리(두부) 손상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법적 기준 즉, 법 관련 지침을 원장과 교사들이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치원 내 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나. 유치원 실내·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교사 인식<sup>5)</sup>

취학 전 3-5세 유아가 가정과 함께 가장 많이 머무는 시설 중 하나는 유치원이며, 유치원에서 유아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원장과 교사에게 있다. 따라서 원장과 교사는 스스로 유아의 안전을 위해 실행해야 할 법규 혹은 규칙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업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현직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교사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실내·외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교육 혹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사대상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성별			연령		
남	2	1.3	20대	127	79.9
여	157	98.7	30대	23	14.5
			40대 이상	4	2.5
			무응답	9	5.7
기관 소재 지역			최종학력		
대도시	106	66.7	2~3년제 대학	103	64.8
중소도시	42	26.4	4년제 대학	52	32.7
읍면지역	3	1.9	대학원	2	1.3
무응답	8	5.0	무응답	2	1.3
전공			기관설립유형		
유아교육학	153	96.2	공립 단설	5	3.1
아동(가족)학	4	2.5	공립 병설	21	13.2
무응답	2	1.3	사립 법인	57	35.8
			사립 개인	68	42.8
			무응답	8	5.0
전체	159	100.0	전체	159	100.0

5) 본 조사의 결과는 완결된 조사의 결과가 아니므로, 본 고 외에서 인용은 삼가기 바람.

## 2) 조사방법 및 분석

본 설문조사는 현직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교사 경험을 가진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를 구하여서 2015년 3~4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및 대구 일부 지역과 경인지역 소재 유치원 전·현직교사들이 참여하였다.

조사문항은 간략한 인적 특성, 유치원 안전교육 관련 교사교육 이수 유무, 유치원 안전관리에서 원하는 교육 내용 및 참가 의사,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등으로 기본적인 현황 파악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3) 조사 결과

### 가) 유치원 안전 관리 교육 관련 내용

유치원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직전 교사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수강한 경험 유무, 교과목명 등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안전관리교과목을 이수한 비율은 약 7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과목 명에서는 유아(아동)건강교육이 가장 많았고, 아동안전관리, 아동안전교육(안전지도)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만을 중점으로 다룬 수업을 이수한 교사는 35.2%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편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는 학과에서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6.5%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에서 유치원 안전(유치원실내·외 환경 등)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89.3%로 매우 높았다.

<표 8> 유치원 안전 관리 관련 직전교사교육과정 현황

		단위: 명(%)	
구분		계(수)	
전체		159(100.0)	
교과목 이수 여부		이수 하지 못한 이유	
예	121 (76.1)	학과 개설하지 않음	32(86.5)
아니요	37 (23.3)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음	2(5.4)
무응답	1 (0.6)	무응답	3(8.1)
교과목 명칭		대학 교과목 개설 관련	
유아(아동) 건강교육	90(56.6)	개설해야 한다.	142(89.3)
아동 안전관리	11(6.9)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9(5.7)
아동 안전교육(안전지도)	45(28.3)	무응답	8(5.0)
성폭력 응급처치	2(1.3)		
기타	11(6.9)		
(영양학, 놀이안전, 유아교육개론, 등)			

유치원교사가 된 이후 유치원 안전(유치원실내·외 환경 등)관련 교사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74.2%로 높았으나, 이수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25.2%로 전체의 약 1/4로 정도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안전 관련 교사교육 이수 여부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요	무응답	계(%)
교육이수 여부	118(74.2)	40(25.2)	1(0.6)	159(100.0)

유치원 안전 관련 교사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 내용은 아동(성)학대 방입 등에 대한 교육,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통학차량안전교육, 화재 및 재난 등 천재지변 대비 안전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안전 관련 교사교육 내용

구분	단위: 명(%)							
	유아대상 활동 중심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안전규칙 등 법령	통학차량 안전	아동(성) 학대 및 방입	조리 및 급식 안전	화재 및 재난 등	기타
응답 수	42(26.4)	78(49.1)	38(23.9)	61(38.4)	92(57.9)	18(11.3)	60(37.7)	52(32.7)

주: 중복응답

응답자의 93.1%는 기회가 된다면 유치원 안전 관련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원하는 교육내용은 유치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유아대상 활동중심 안전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안전 관련 교사교육 참여 의향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요	계(수)
교육 참여 여부	148(93.1)	11(6.9)	159(100.0)

〈표 12〉 안전 교사교육 내용 요구 정도

구분	단위: 명(%)							
	유아대상 활동 중심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안전규칙 등 법령	통학차량 안전	아동(성) 학대 및 방입	조리 및 급식 안전	화재 및 재난 등	기타
응답 수	81(50.9)	87(54.7)	18(11.3)	17(10.7)	14(8.8)	0(0.0)	5(3.1)	13(8.2)

주: 중복응답

나) 유치원 안전 관리 업무 현황

교사가 인지 혹은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 안전 관리 업무를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안전 관리 수행 시, 어려움에 대해서 <표 13>에서와 같이 관리 업무에 대한 구비서류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점검대상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모른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유치원 안전 관리 업무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불명확한 지시사항	점검대상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모름	점검대상 내용에 대해서 모름	구비서류를 자체적으로 확인 준비해야 함	여러 곳에서 같은 항목을 다른 방법으로 요청해서 혼동이 됨	기타	무응답	계
응답 수	20(12.6)	36(22.6)	9(5.7)	48(30.2)	16(10.1)	15(9.4)	15(9.4)	159(100.0)

유치원 안전 관련 업무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표 14>와 같다.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안전 관리 업무처리, 정기적인 지도점검, 안전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사들의 약 70% 이상은 원장 혹은 기관으로부터 안전 관리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안전점검 매뉴얼을 활용하고, 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 관리 전문 인력 배치, 교직원의 안전 관리 항목 숙지, 유치원 안전 실태에 대한 학부모 공지, 유치원 안전 관리를 위한 학부모 협조 요청 등의 항목은 그렇지 않다와 모름의 비율이 약 40~50%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에서 특이사항은 '그렇지 않다' 에 비해 '모름'의 비율이 높고, 15개 항목 중 8개 질문 문항에서 모름의 비율이 20%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부 교사들은 기관에서 안전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표 14> 유치원 안전 관리 업무 사항

단위: 명(%)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1) 유치원은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 처리과정이 있다.	135(84.9)	3(1.9)	20(12.6)	1(0.6)
(2) 유치원 안전 관리 담당자 연수가 각 해당 교육청 등에서 실시되며, 참여한다.	132(83.0)	1(0.6)	26(16.4)	0(0.0)
(3) 행정당국의 정기적·지속적 안전 관리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126(79.2)	1(0.6)	32(20.1)	0(0.0)



(표 14 계속)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4) 전문적으로 안전 관리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이 기관에 있다.	74(46.5)	46(28.9)	39(24.5)	0(0.0)
(5) 안전 관리 점검에 대한 교직원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다.	134(84.3)	6(3.8)	19(11.9)	0(0.0)
(6) 교직원은 안전 관리 점검의 모든 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93(58.5)	34(21.4)	32(20.1)	0(0.0)
(7) 교직원은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 점검 교육을 원장 혹은 기관으로부터 받는다.	114(71.7)	23(14.5)	22(13.8)	0(0.0)
(8) 안전 관리 점검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125(78.6)	11(6.9)	22(13.8)	1(0.6)
(9) 사전 점검에서 지침 혹은 매뉴얼을 활용한다.	125(78.6)	6(3.8)	28(17.6)	0(0.0)
(10) 안전 관리 사전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26(79.2)	5(3.1)	28(17.6)	0(0.0)
(11) 행정당국의 점검 후, 시정 조치를 준수한다.	123(77.4)	2(1.3)	34(21.4)	0(0.0)
(12) 안전 관리 지도 후, 사후(시정) 조치에서 지침 혹은 매뉴얼을 활용한다.	121(76.1)	5(3.1)	33(20.8)	0(0.0)
(13) 각 안전 관리 점검 항목의 담당 행정처(예, 화재-소방방재청 등)를 알고 있다.	108(67.9)	12(7.5)	39(24.5)	0(0.0)
(14)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안전 관리 점검 실태를 공지하고 있다.	88(55.3)	31(19.5)	40(25.2)	0(0.0)
(15) 안전 관리 점검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따라 학부모의 협조를 받고 있다.	78(49.1)	37(23.3)	44(27.7)	0(0.0)
계	159(100.0)			

유치원 실내·외 환경 관련 안전 업무 관련한 질문에서 모든 부분에서 실시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내·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물에 대해서도 안전 업무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 영역 중 실내 공기 질과 석면 관리에 있어서는 '아니요'의 응답비율이 각 11.9%, 22.0%로 나타났고, 무응답 비율이 낮지 않아서 이 같은 교사 반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 유치원 안전 업무 관련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네	아니요	무응답
환경	실내 공기 질	131(82.4)	19(11.9)	9(5.6)
	석면관리	109(68.6)	35(22.0)	15(9.4)
	청결점검	150(94.3)	2(1.3)	7(4.4)
실내	교실환경 점검	149(93.7)	3(1.9)	7(4.4)
	교재교구 관리	149(93.7)	3(1.9)	7(4.4)
	비상로 설치 등 시설물	143(89.9)	8(5.0)	8(5.0)

(표 15 계속)

	구분	예	아니요	무응답
실외	놀이시설	140(88.1)	9(5.7)	10(6.3)
	놀이터 환경	142(89.3)	7(4.4)	10(6.3)
	입·출입 시설	141(88.7)	8(5.0)	10(6.3)
	계	159(100.0)		

유치원 안전 업무 담당자가 있는 곳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무 영역에서 원장이나 직원에 비해 교사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서 교사가 담당자인 경우 실내 공기 질 39.0%, 청결점검 71.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석면관리는 직원이 가장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안전 업무에서는 교실환경 점검 83.6%, 교재교구관리 87.4%, 비상로 설치 등 시설물 57.9%로 교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원장과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실환경 점검과 교재교구 관리는 교사들에게 익숙한 업무이나 비상로 설치 등 시설물 관리에서도 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외 환경에서 놀이시설 59.7%, 놀이터 환경 63.5% 입·출입시설 58.5%로 교사가 역시 원장과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당하는 비중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16〉 유치원 안전 업무 관련 담당자 유무

		단위: 명(%)				
구분		유			무	무응답
		원장	교사	직원		
환경	실내 공기 질	25(15.7)	62(39.0)	50(31.4)	9(5.7)	29(18.2)
	석면관리	30(18.9)	39(24.5)	49(30.8)	19(11.9)	39(24.5)
	청결점검	23(14.5)	113(71.1)	28(17.6)	2(1.3)	16(10.1)
실내	교실환경 점검	18(11.3)	133(83.6)	8(5.0)	1(0.6)	16(10.1)
	교재교구 관리	13(8.2)	139(87.4)	8(5.0)	0(0.0)	16(10.1)
	비상로 설치 등 시설물	34(21.4)	92(57.9)	28(17.6)	3(1.9)	19(11.9)
실외	놀이시설	30(18.9)	95(59.7)	27(17.0)	5(3.1)	19(11.9)
	놀이터 환경	28(17.6)	101(63.5)	21(13.2)	6(3.8)	20(12.6)
	입·출입 시설	33(20.8)	93(58.5)	28(17.6)	6(3.8)	19(11.9)

주: 담당자는 중복응답

유치원 교사들은 안전 업무 관련 매뉴얼 소지를 확인하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환경 영역에서는 청결점검을 제외한 실내 공기 질, 석면관리와 같은 영역에서는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매뉴얼 자체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45.9%, 52.8%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실내 안전 업무인 교실환경 점검,

교재교구 관리, 비상로 설치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소지하는 비율은 모두 7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외안전 업무인 놀이시설, 놀이터 환경, 입·출입시설에서도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응답 비율이 각 71.1%, 69.2%, 64.8%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도 매뉴얼 소지 여부에 무응답에 대한 의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7〉 유치원 안전 업무 관련 매뉴얼 유무

		단위: 명(%)		
구분		유	무	무응답
환경	실내 공기 질	86(54.1)	39(24.5)	34(21.4)
	석면관리	75(47.2)	44(27.7)	40(25.2)
	청결점검	110(69.2)	19(11.9)	30(18.8)
실내	교실환경 점검	113(71.1)	17(10.7)	29(18.2)
	교재교구 관리	112(70.4)	18(11.3)	29(18.2)
	비상로 설치 등 시설물	112(70.4)	16(10.1)	31(19.5)
실외	놀이시설	113(71.1)	16(10.1)	30(18.9)
	놀이터 환경	110(69.2)	18(11.3)	31(19.5)
	입·출입 시설	103(64.8)	24(15.1)	32(20.1)

유치원 안전 업무 지도관리 형태는 각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서 실내 공기 질 관리, 석면관리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가 요구되므로 외부 점검의 비율이 높은 반면 청결점검은 자체점검 응답률이 높았다. 실내·외 안전 관리 업무 영역에서는 모두 자체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 '모름'의 응답 비중이 실내 공기 질, 석면관리와 같이 전문 영역과 교실환경 점검, 교재교구 관리와 같은 교사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 외에는 17.6~18.9% 사이로 나타나 응답 교사 중 약 1/5정도는 유치원 안전 업무관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8〉 유치원 안전 업무 지도관리 형태

		단위: 명(%)			
구분		자체점검	외부점검	모름	무응답
환경	실내 공기 질	41(25.8)	66(41.5)	39(24.5)	13(8.2)
	석면관리	31(19.5)	57(35.8)	58(36.5)	13(8.2)
	청결점검	112(70.4)	12(8.2)	28(17.6)	6(3.8)
실내	교실환경 점검	126(79.2)	4(2.5)	19(11.9)	10(6.3)
	교재교구 관리	126(79.2)	4(2.5)	19(11.9)	10(6.3)
	비상로 설치 등 시설물	93(58.5)	25(15.7)	29(18.2)	12(7.5)

(표 18 계속)

	구분	자체점검	외부점검	모름	무응답
실외	놀이시설	102(64.2)	22(13.8)	27(17.0)	8(5.0)
	놀이터 환경	99(62.3)	23(14.5)	28(17.6)	9(5.7)
	입·출입 시설	103(64.8)	16(10.1)	30(18.9)	10(6.3)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다수의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안전(실내·외 안전 등)에 대한 직전 및 현직교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교사로서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안전관리 업무 관련 몇 문항에서 무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유치원 실내·외 안전 관련 법령<sup>6)</sup>

#### 가. 실내·외 시설

##### 1) 교재·교구

유치원 실내 시설로서 교재·교구는 안전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안전인증

교재·교구 등 유아들이 사용하는 공산품을 선택할 때 공산품의 안전여부는 KC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나누어진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 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 여기서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와

6) 1. 이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에서 2015. 4. 17. 인출.  
2.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유치원 실내·외 안전에 포함된 내용에서 일부 발췌하여 서술함.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7호), 생활용품 중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이 해당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9호).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계 어린이용품,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학용품 등이 해당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호).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3).

#### 나) 연령기준

연령기준에 적합한 용품을 선택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7조에서는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제한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공산품 판매업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유치원에서 각 공산품에 정해진 연령 기준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게 구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에서도 아동을 위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겠다.

- 가. 제품의 성분·함량·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제품 사용 적정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에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2)

#### 다)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어린이용 공산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허용치 이하만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6호: 2010. 12. 27)이 적용된다. 여기서 어린이용 공산품이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을 말하며, 유해물질이란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위해 자석 등이 해당된다.

한편 2015년 6월 4일부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2014년 6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며(동법 제4조)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어린이놀이시설

다음으로 유치원 실외 시설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유치원의 놀이터를 의미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항),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 제품을 말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한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금지 조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 보험가입의무위반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5호).

나)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이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4항).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를 위한 도안은 <표 19>와 같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刻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 19>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 도안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				
설치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검사자				
검사기관				
유효기간				
정기시설검사 합격여부	1차	2차	3차	4차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만약 관리주체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또한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 다) 안전점검 및 환경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표 20>과 같다.

<표 20>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구분	내용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 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만약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또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한편 환경보건법에서도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모두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라) 안전관리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정하고, 그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부터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 마) 사고발생 시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유치원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장에게 보고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6호).

한편 통보해야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를 말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나. 공기의 질

유치원의 공기의 질에 관하여는 학교보건법을 따른다.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학교보건법 제2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실내 공기질의 유지 기준은 <표 21>과 같다.

<표 21> 공기의 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mu\text{g}/\text{m}^3$ )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mu\text{g}/\text{m}^3$ )	100		
총부유세균(CFU/ $\text{m}^3$ )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mu\text{g}/\text{m}^3$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text{m}^2$ )	100	보건실	

자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또한 공기의 질 관리 기준은 <표 22>와 같다.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기준은 신축학교,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10년 이상의 학교 및 도로변 학교로 대상 시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공기의 질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li> <li>○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li> <li>○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li> <li>○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li> </ul>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li> </ul>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li> <li>○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li> <li>○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li> </ul>
도로변 학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li> <li>○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한함)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li> <li>○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li> </ul>

자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표 23〉 점검 종류 및 시기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1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 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li> <li>○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li> <li>○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li> <li>○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li> </ul>

자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유치원장은 유치원 실내 공기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 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측정대행

업자)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점검 결과는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학교보건법 제4조 제2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학교보건법 제4조 제4항).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표 23>과 같다.

한편 유치원장은 유치원 환경위생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 즉,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여 환경위생 전반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환경위생 업무에는 공기의 질 유지 및 관리가 포함된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다. 석면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은 누구든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석면을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석면조사

유치원장을 포함하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단,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

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1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부과한다.

## 2) 석면관리

###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신고 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관리인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이다(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3항 제2,3호).

### 나) 건축물 관리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또한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또한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4.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개발 및 예시

유아의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서는 안전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고 시기별로 진행되는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치원 안전 법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법령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례에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안전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 혹은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유치원장과 교사를 위한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개발 과정 및 개발된 예시를 제시하겠다.

### 가.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개발 개요

#### 1) 필요성(목적) 및 기대효과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는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다음의 이유로 제기되어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 최근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가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관심 제고
- 유치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양하여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파악 어려움.
-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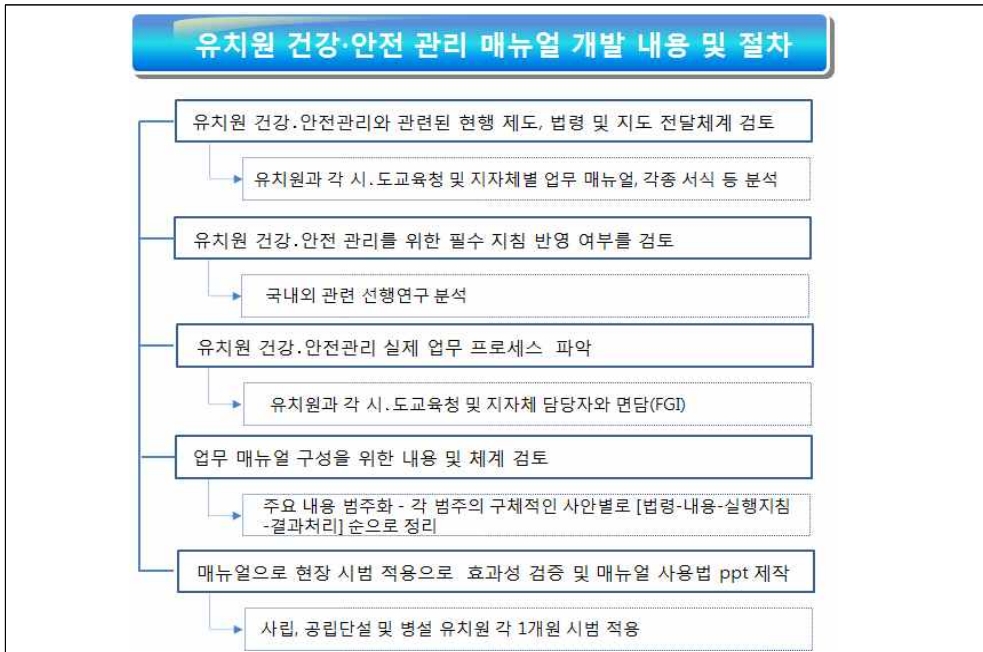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이유로 개발 진행된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는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업무 매뉴얼 보급을 통한 교직원의 유아 건강 및 안전 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개발절차

본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의 보급대상, 활용목적과 개발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 : 원장(유치원 경영자), 시·도교육청 유치원의 안전 관리 담당자, 교사
- 활용 : 유치원 교원 및 시·도교육청 유치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보급하여 업무처리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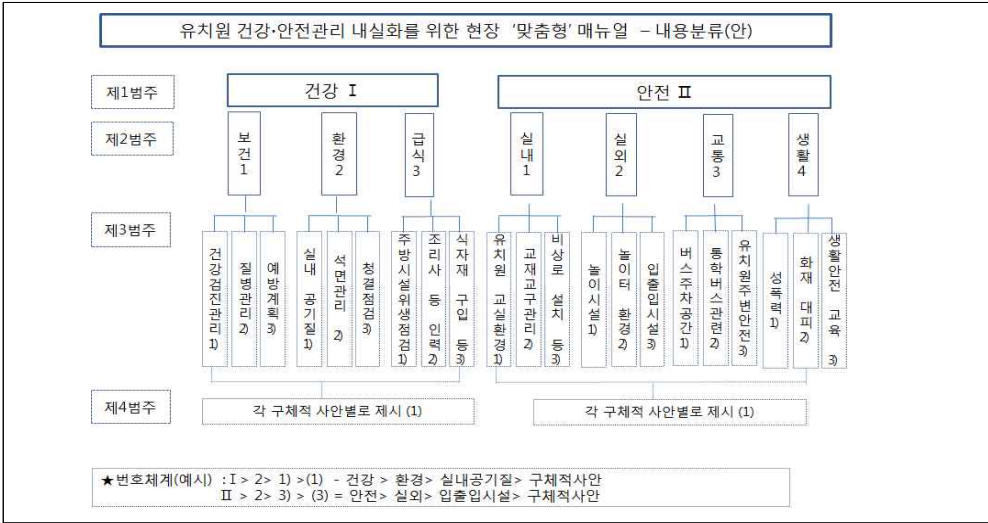
○ 개발절차 : [그림 2]와 같음.



[그림 2]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개발 절차

### 3) 내용 및 구성 체계

본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에서는 화재예방, 교통안전(통학버스), 실종·유괴 예방, 성범죄 예방, 응급처치, 놀이시설, 실내 환경보건, 감염병, 급식위생, 체험학습, 전기·가스안전,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그림 3]과 같은 구성 체계로 최초 계획하여 최종 체계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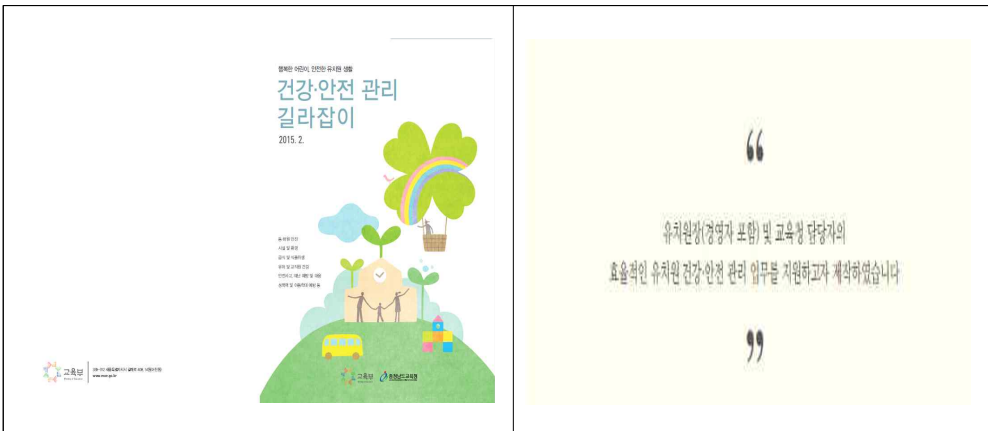


[그림 3] 내용 및 구성 체계

## 나.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예시 및 활용방법

### 1) 구성 및 내용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의 전체 구성은 대상과 활용목적에 적시한 후, 각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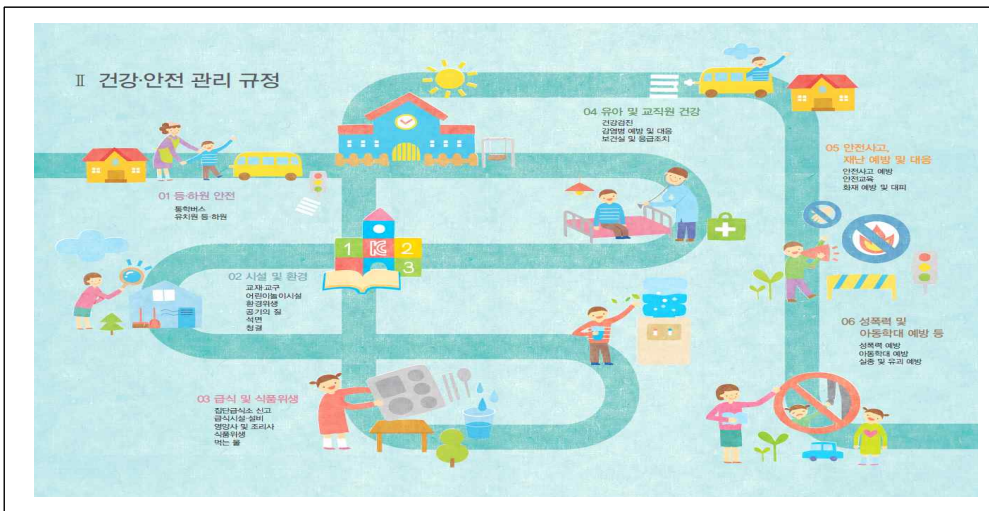


[그림 4] 겉표지와 속표지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의 내용은 유아가 등원하는 순간부터 하원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목차</p> <p><b>I. 들어가는 글</b></p> <p>006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소개</p> <p>007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활용 안내</p>		<p>066 인성교육</p> <p>070 감정관리 예방 및 대응</p> <p>072 보건의료 및 응급조치</p>
<p><b>II. 건강·안전 관리 규정</b></p> <p>01 등하원 안전</p> <p>010 통학버스</p> <p>016 유치원 등 하원</p> <p>02 시설 및 환경</p> <p>020 교재 교구</p> <p>022 어린이놀이시설</p> <p>028 화장실</p> <p>030 공기질 및</p> <p>034 식안</p> <p>040 환경</p> <p>03 음식 및 식용위생</p> <p>044 조리·음식물 취급</p> <p>048 급식·음식물 섭취</p> <p>052 영양사 및 조리사</p> <p>056 식용위생</p> <p>060 먹는 물</p>		<p>06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p> <p>076 안전사고 예방</p> <p>078 안전교육</p> <p>080 화재 예방 및 대피</p> <p>06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p> <p>086 성폭력 예방</p> <p>088 아동학대 예방</p> <p>100 실행 및 유과 예방</p>
<p><b>III. 부록</b></p> <p>106 사건사고 대처 요령</p> <p>114 행정서비스예시</p> <p>114 통학버스 운행 및 접근 시</p> <p>114 사건사고 등 재난 발생시 신고 서비스예시</p> <p>114 식용위생 점검 시</p> <p>114 유치원장 건강안전 보고서예시</p> <p>122 건강안전 관련 정보사이트</p>		



[그림 5] 목차 및 내용

[그림 5]에서 보면, 등·하원 안전은 통학버스 및 유치원 등·하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통학버스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통학버스 준비·차량운행·관리 까지 법적으로 요구하는 유치원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특히 통학버스 안과 승·하차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치원 등·하원은 유치원 주변에서 출입문, 어린이보호구역, 경찰(학교안전요원) 순찰과 교통지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 및 환경에서는 실내·외 시설, 공기의 질, 석면, 청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 고찰된 법령에서 상세히 제시된 바와 같다(3장 내용 참조).

급식 및 식품위생은 건강관련 영역으로 유치원에서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 급식시설, 조리장, 설비기구, 급수시설 등의 급식시설·설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유아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과 건강을 위해 꼭 준수해야 할 시설물 관리점검도 소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요건과 직무를 법적 내용에 맞춰 서술하였으며, 식품 위생과 먹는 물의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아 및 교직원 건강이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보건실 및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특히 72개월 미만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제도와 유치원 취원 혹은 재원 유아의 건강검진서 제출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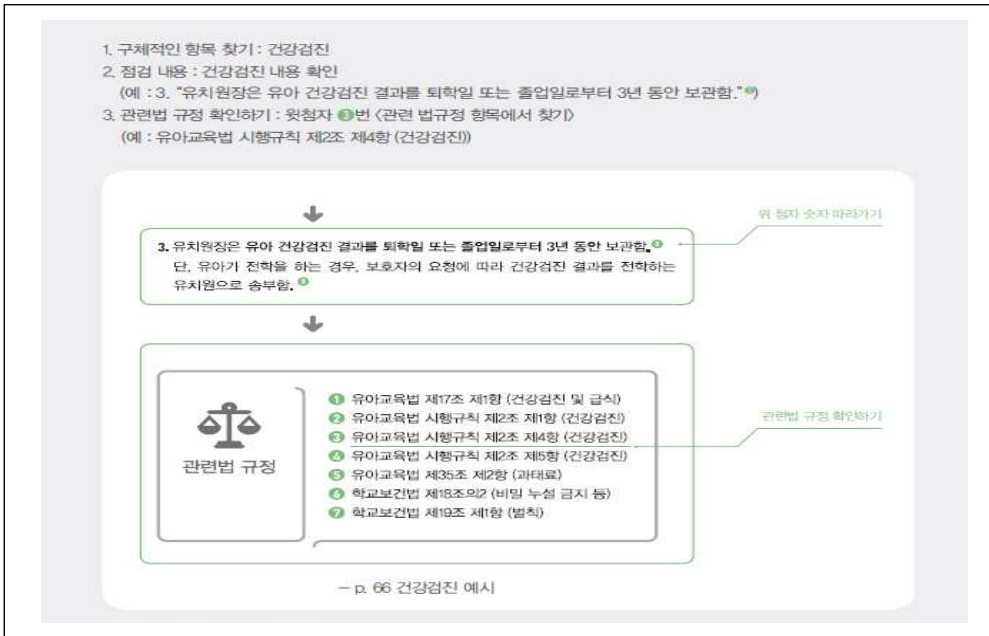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 및 대응은 유치원의 견학(야외학습), 화재 등에 대한 내용과 유치원 원장에게 요구되는 안전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사건사고 발생 후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유치원장은 유치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대응요령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의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고, 유치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화재 내용을 상세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이다. 3-5세 유아는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출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유치원장은 유아를 성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무감이 매우 크다. 본 책은 유치원장의 책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록된 관리 내용은 교직원과 유아 모두에게 적합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유아를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유치원장뿐 아니라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동학대 범죄 관련 전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2) 활용방법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치원장, 유치원 교사, 지역 교육청 안전 지도 담당자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본 책은 유치원 건강·안전 관련 지도

점검 및 관리 사항 관련 법, 지도점검과 자체점검에서 요구되는 구비서류, 과태료와 벌칙 및 유치원 정보공시 기재 여부를 수록하고 있다.



[그림 6] 활용방법

또한 기준이나 관리점검 내용에는 관련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의 활용방법에 따라 활용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활용예시] - 어린이 놀이시설(※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 22~26쪽 참조)

1. 구체적인 항목 찾기
2. 점검 내용 확인하기

**놀이시설의 유지**


1. 유치원장(관리주체)은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 정도, 변형, 창결, 안전수칙 등의 표시여부, 부대시설의 파손 및 위험물질 상태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⑤

2.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곰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함. ⑤

3. 시설물에 사용되는 도료, 마감재료, 목재는 규정하는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해야 함. ⑤

4. 바닥의 모래 등 토양은 남, 카드론, 67크롬, 수은 및 비소는 정하는 기준(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적합해야 하며 기생충원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⑤⑥


관련법령 번호

 과태료/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진단 결과 철거, 이용중단 명령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명령을 위반한 자 ㉔
  - 거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혹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㉕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㉖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㉗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㉙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㉚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㉛
  - 안전교육을 받도록 아니한 관리주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㉜
  - 보험가입의무위반자, 사고발생 시 통보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㉝
  -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㉞
-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도로, 마감재료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각 항목의 기준 시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항목별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㉟
  - 모래의 기생충 및 시험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당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㊱
  - 목재의 방부처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만 원의 과태료 ㊲

과태료/벌칙확인  
(관련 법령확인하기)

### 3. 관련법 규정 확인하기

 관련법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2항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2항 (안전교육)
  - 2015. 7. 1부터 개정법 시행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2항 (보험가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호 (벌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4호 (벌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호 (벌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6호 (벌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벌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호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호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호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4호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5,6호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7호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정기시설검사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안전점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보험의 종류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별표2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 2015. 6. 4부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법령확인하기

## ☞ 법령 확인하기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 ☐ 조문
- ☐ 제1장 삭제 <2008.12.19>
- ☐ 제2장 삭제 <2008.12.19>
- ☐ 제3장 삭제 <2008.12.19>
- ☐ 제4장 삭제 <2008.12.19>
- ☐ 제5장 삭제 <2008.12.19>
- ☐ 제6장 삭제 <2008.12.19>
- ☐ 부칙

[전문개정 2008.12.19.]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단비교	법령단위비교	위임행정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b>기준</b>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b>기준</b> [대통령령 제26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b>기준</b>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p><b>제15조(안전점검 실시)</b>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p>	<p><b>제11조(안전점검 실시)</b>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할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b>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b>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li> <li>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악도</li> <li>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1., 2011.8.31&gt;</li> <li>1. 식재 &lt;2011.8.31&gt;</li> <li>2. 식재 &lt;2011.8.31&gt;</li> <li>3. 식재 &lt;2011.8.31&gt;</li> </ol>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3305&lsiId=010575&chrClsCd=010202&urlMode=lsEfnfoR&viewCls=thdCmpNewScP>) 2015. 4. 22. 인출.

## 4. 관리점검 실행 및 점검 일지 작성하기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행 및 점검한 내용을 구비서류에 맞게 작성함.

구비 서류

- 놀이시설사고보고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안전점검실시대장 / 놀이기구 관리대장
- 설치검사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사진포함, 놀이기구 목록-안전검사 번호나 안전인증번호 포함, 설치장소에 관한 악도 구비함.)

## 5. 맺음말

유아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늘 자리 잡고 있으며, 안전한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유아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유치원 교육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을 제시하고, 간략한 유치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식과 업무 현황을 알아보고, 실내·외 안전 관리의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유치원에서의 안전 관리 업무를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유아들이 하루 중 오랜 시간 머무는 유치원 실내·외 공간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시작하는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기 발달 특성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을 유아기 발달 특성 때문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치원 물리적 환경의 개선, 교사 및 유아 대상 안전 교육 실시, 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 업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장과 교사는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안전 관리 교육을 받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현직교사 시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기회를 할애하고 있다. 간략한 설문조사 결과이기도 하나, 대다수의 교사들이 안전 관리와 관련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를 비롯한 유치원의 교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과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전 관리 담당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안내서(매뉴얼 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간략한 설문조사 결과이나, 안전 관리 담당자가 교사인 경우가 많았는데 하루 중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유아와 수업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 관리 업무까지 부과되면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교사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안전 관리 기준을 습득하고, 안전 관리를 실행하는 과정 즉,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시급하게 혹은 매일 혹은 매년 점검해야 하는지, 점검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모두 숙지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유치원장이나 직원 등 교사 외의 인력이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비율을

높이거나, 영역별로 적합하게 관리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중대한 사항이나 유치원 자체적으로 점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할이 앞으로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유치원장과 교사가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안전 관리점검의 진행과정이나 절차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유치원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의 기준을 따르기도 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다양한 형태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 3월부터 전국 유치원에 배부되고 있는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는 유치원장, 교사 및 관련 직원들이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법령을 비롯한 여러 기준들은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경되므로 앞으로 개정된 사항을 즉각 제공하여 현장에서 혼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령이 제정·개정되거나 지자체 혹은 기관에서 기준이 마련될 때에는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 안전 수준을 낮추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유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실제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의 안전 환경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탐색하고 제안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기술표준원(2010. 12. 27).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기술 표준원 고시 제2010-676호.
- 김경중·서경택(2009). 한국 아동 안전사고의 사회적 비용 추정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 행정연구, 13(2), 73-93.
- 박영선·신동주(2014). 유아교육기관 유아 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 교육연구, 34(2), 347-370.
- 박은혜(2006). 유치원 안전사고 처리와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26(2), 83-103.
- 박지민(2012). 어린이안전사고 실태조사 -가정,교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한국 소비자원 KCA보고서.
-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 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26.
- 최은영·김은영·이세원(2013). 유아교육·보육 통합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위탁 2013-37.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온라인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2015. 4. 17. & 2015. 4. 22. 인출.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http://www.isafe.go.kr/children/contents.do>). 2015. 3. 31. 인출
- 학교안전중앙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06\\_participation/part05.html](http://www.ssif.or.kr/06_participation/part05.html)). 2015. 4. 20. 인출.





## 토론

---

이성희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치원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관리를 위한 탐색’ 토론 1

이성희(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등은 더 이상 안전 사고가 해당 당사자들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 특히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있어 성인의 돌봄과 보호가 필수적인 영유아에게 안전은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의 많은 영유아가 하루일과의 대부분인 8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지내게 됨에 따라 가정안전과 동일하게 유치원의 안전이 일차적 관심 영역이 되고 있다.

어떤 유치원이 유아에게 안전할까? 유아가 등원하는 순간, 또는 통학버스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하차해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순간까지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성인은 유아를 안전하게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안전한 실내외 환경 관리를 기본으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와 실천적 노력 및 성인의 안전행동 일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심포지엄 연구는 현재 유치원의 안전사고 상황과 인식, 그에 따른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발표를 토대로 유치원 안전을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노력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을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사교육 측면에서 제언해 보고자 한다.

## 2. 유치원 안전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의 안전사고는 주로 수업시간 중 실외보다는 교실 안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활동중심의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가 유아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시공간의 안전과 그에 대한 교사교육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 안전을 위한 교사교육은 교사 중심의 안전지식내용영역에 초점이 되어 있어 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가 유아를 교육하는

시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안전사고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교수행동 및 교실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박영선, 신동주, 2014; 박은혜, 조혜선, 이성희, 황보영, 2012) 대부분의 안전교육관련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은 유아 안전교육활동에 초점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하루일과 중 실내에서 벌어진다면, 교사의 어떤 행동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유아의 어떤 행동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사자 준비하고 제공하는 환경과 자료가 안전한지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지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유아의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지도를 실외에서 수행할 때 부모에게 활동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느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아를 밀착해 지도하지 못하는 일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개별 영유아의 신체운동능력과 상황인지 능력의 차이, 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행동 특성, 교사의 안전사고 유발 행동과 상황 등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교실 안의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스스로 반성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치원 안전관련 교사교육 방식은 일회성 중심의 특강이 아닌 교사행동 실천 및 일상화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교사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전달 중심의 특강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따른 교사의 행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원내 장학 및 컨설팅 지원 등 정례적 실행 및 피드백 형식의 교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안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가 평상시에도 충분히 소통되고 점검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현장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교실 수업 활동에 대한 자료지원 요구가 있다(김은영, 2014). 본 연구 결과에도 역시 교사들은 활동중심의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사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아가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인식하고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유아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기술, 태도가 균형을 갖추어 습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은 일회성의 활동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유아가 안전에 대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라는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과 협동, 문제해결을 통해 안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주체자로서 안전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 4. 행정적 지원 노력

안전한 유치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사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안전사고 발생 후 대처에만 초점이 되는 방식이 아닌 평상시 안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보면 교사들의 안전관리업무가 교실 안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 관리를 넘어 유치원 전반의 시설물 관리까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는데 기관의 운영관리 시스템 자체가 비구조적이며, 유기적이지 않을 때 유치원 구성원의 사고와 문화가 안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안전한 조직문화, 효율적인 안전 관련 업무 구조화 및 연계, 매뉴얼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 순환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시스템 검토 및 개선 등의 행정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 5. 나가는 말

유아가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인 유치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치원의 유아, 교사, 원장 및 교직원, 부모 모두가 주체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전한 유치원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성적 사고 능력을 통해 스스로 안전한 교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교육, 교사 안전행동 일상화를 위한 교사교육, 유아의 안전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안전교육과정 설계,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안전시스템과 조직문화 형성 등의 노력을 제안하였다. 안전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안전한 유치원,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은영(2014). 누리과정 발전 포럼을 통해 본 누리과정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2014 한국 유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8-96.
- 박영선·신동주(2014). 유아교육기관 유아 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 교육연구, 34(2), 347-370.
- 박은혜·조혜선·이성희·황보영(2012). 영유아 안전교육. 서울: 파란마음.